

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

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(담당 : 유동림 간사 02-723-5302 dryou@pspd.org)

제 목 [보도자료] 참여연대, <문 닫고 회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>보고서 발행

날 짜 2015. 7. 9. (총 4 쪽)

보 도 자 료

참여연대, <문 닫고 회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>보고서 발행 다른 정부위원회보다 운영의 폐쇄성 심각해 속기록 작성·공개하고, 시민 방청 보장해야 고용노동부, 국회 소관 상임위, 최저임금위에 개선 요구서 보낼 예정

1. 취지와 목적

-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기관의 한 형태로 각종 ‘정부위원회’가 설치·운영되고 있음. 그런데 이 같은 정부위원회 중에는 역할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△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, △ 위원 구성의 적정성, △ 위원회 기능의 실효성, △ 위원회 결정의 타당성과 공정성 등의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드러나,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적지 않음.
특히 2016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는 회의공개 수준을 둘러싸고 참석 위원들 간에 논쟁이 불거졌고, 회의에 배석한 후 위원들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담은 ‘참관기’를 인터넷매체에 작성해 올린 시민의 행동을 문제 삼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음.
- 참여연대는 정부위원회 개혁을 위한 첫 번째 문제제기 대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 작성·공개 수준과 시민 방청 허용 여부를 살펴보았음.

2. 개요

-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(속기록) 작성 및 공개 현황
- <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>에 회의록 작성 규정은 있지만 속기록 작성 규정은 없으며, 회의록 공개 및 공개시점에 관한 규정도 없음. 실제로 최근

까지 회의록은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았음. (6.19 이후 2015년도 회의결과 일괄 공개)

- 회의록은 주요논의를 요약한 ‘회의결과’ 형식으로 작성되며 개별 위원들의 구체적인 발언은 기록되지 않고 있음.
- 회의 결과는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에 외부에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회의내용과 결과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없음.

※ 다른 정부위원회와 비교

-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 <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>에 회의록속기록 작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, 속기록은 회의완료 후 가까운 시일 안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.
-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우 <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>에 회의록 작성을 규정하고 있고, 회의록에는 개별 위원들의 발언내용을 모두 게재하도록 함. 회의록 작성이 완료되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.
- 사면심사위원회의 경우 <사면법 시행규칙>에 회의록 작성을 규정하고 있으며, 심의과정에서 개별 위원들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회의록에 개별 위원의 의견을 기재하도록 함.

○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시민 방청(참관) 허용 현황

- 일반 시민 방청을 허용하는 규정 없음. 이에 일반 시민은 위원회 회의를 직접 방청할 수 없으며, 다만 관행적으로 사용자위원측 또는 근로자위원측이 배석자를 데리고 들어가는 형식으로 시민이 회의를 참관할 수 있음.

※ 다른 정부위원회와 비교

- 방송통신심의위원회, 원자력안전위원회 모두 회의공개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, 일반 시민의 방청을 보장하고 있음

		최저임금위원회	원자력안전위원회	방송통신심의위원회	사면심사위원회
위원회 성격		심의·의결	심의·의결	심의·의결	심사·자문
회의록 공개	규정유무	O	O	O	O
	홈페이지 공개여부	위원장 동의 후 공개	공개	공개	비공개
	공개시점	모든 심의 완료 후 공개 (2014년까지)	회의결과 당일에 게재 회의록,속기록 2주 이내 게재	차기 위원회 확인 거친 후 게재. (보통 2주)	-
회의록 작성	규정유무	O	O	O	O
	작성수준	주요 의결사항 및 발언 요약하여 '회의결과' 작성	회의결과, 회의록,속기록 각각 작성	심의의결서,회의 발언내용,부록 각각 작성	속기록 수준 (논쟁 발생시)
회의 공개	규정유무	X	O	O	X
	공개여부	비공개	공개	공개	비공개
회의 방청	규정유무	X	O	O	X
	방청	불가(배석 형태 로 제한적 허용)	가능(일반시민 방청신청)	가능(일반시민 방청신청)	-

표 1. 최저임금위원회 및 주요 정부위원회의 회의 운영 현황

○ 평가 및 개선사항

- 회의록 작성 시, 개별 위원들의 발언을 그대로 기재하도록 해야 함. 또한 속기록을 포함해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는 즉시 공개한다는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함.
- 원자력안전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처럼,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결과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보았을 때,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과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에 대한 토론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개별위원들의 발언내용을 모두 기록하고 이를 공개해야 함.

-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방청을 허용해야 함. 국민 대다수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,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과정을 국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. 더 나아가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회TV 방송이나 인터넷방송처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도 케이블TV 또는 인터넷으로 생중계해야 하는 것도 시도해야 함.
- 특정 방송프로그램 등에 대해 징계를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시민 방청이 가능하고, 일반 시민 또는 원자력(핵)발전 반대 운동단체들과 정부 및 한국수력원자력(주)같은 전력산업체간의 찬반논쟁이 매우 격렬한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시민 방청이 가능한데,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실시 간으로 방청할 수 없게 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음.

3. 추후 계획

- 19대 국회에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공개 등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올라와 있는 만큼, 국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조속한 입법 및 소관 부처의 개선안 마련을 요구할 계획임.
- 또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 및 최저임금위원회에도 공문을 발송하여, 회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·공개에 대한 원칙을 마련하고 준수할 것을 요구할 예정임.

4. 위 자료는 별첨자료 또는 참여연대 사이트(www.peoplepower21.org)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끝.

■ 별첨자료

1.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<문 닫고 회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>